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6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기간을 가짐.

2. 주요 골자

-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18년 12월 1일부터로 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수 없이 하는 자동차</u></p>	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. 다만,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</p>	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. 다만,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</u></p>	<p>제5조(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)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1. 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. 다만,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</p>